

96.8.30

운전사 여승객 성폭행 택시회사도 배상 의무

서울고법 판결

택시운전사가 여자승객을 차 안에서 욕보였을 경우 택시회사도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9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 차 안에서 운전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아무개(23·여·당시 7대학3)씨와 가족이 운전사 김아무개(원주교도소 수감중)씨와 D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

심에서 택시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피고 회사와 김씨는 강씨 가족에게 1천91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회사의 운송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회사는 김씨의 사용자로서, 김씨는 불법행위자로서 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와 가족은 강씨가 지난 88년 12월10일 밤 종각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강서구 화곡동 집으로 가던 중 운전사 김씨가 택시를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주외리 양어장 부근으로 몰고가 강씨를 폭행하자 소송을 냈었다.

에 타 숨졌다.

여관 종업원 홍정남씨 등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숨진 조씨 등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자신들이 묵고 있던 503호에 들어간 뒤 30여분 만에 방 안에서 불길기 바깥으로 솟아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이들이 분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